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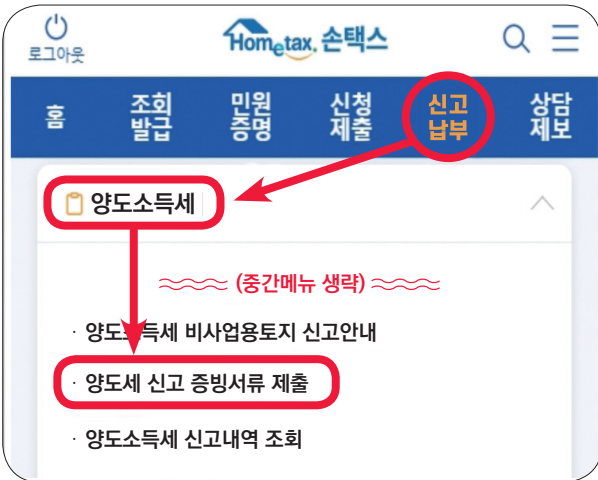
증빙서류 제출

전자신고 후에는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홈택스 → 신고납부 → 양도소득세
→ 신고부속·증빙서류 제출



손택스 앱 로그인 → 신고납부
→ 양도소득세 → 증빙서류 제출



*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



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하고
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~

더 편리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



1 양도소득세 전자신고

-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·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.

2 전자신고 세액공제

- '21.1.1.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(1건당 2만원)가 가능합니다.
※ 예정신고 1건당 세액공제 2만원으로 연간한도가 없으며, 확정신고, 기한후신고, 수정신고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제외

3 신고방법
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모바일 손택스로 전자신고
- 신고도움자료 제공(금융·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)
※ 부동산등기자료, 국토부실거래가자료, 취·등록세납부자료, 현금영수증자료(중개수수료, 법무사비용 등)
-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
신고/납부 → 양도소득세 → 신고부속·증빙서류 제출
- 자세한 신고방법은 신고/납부 → 양도소득세 → 전자신고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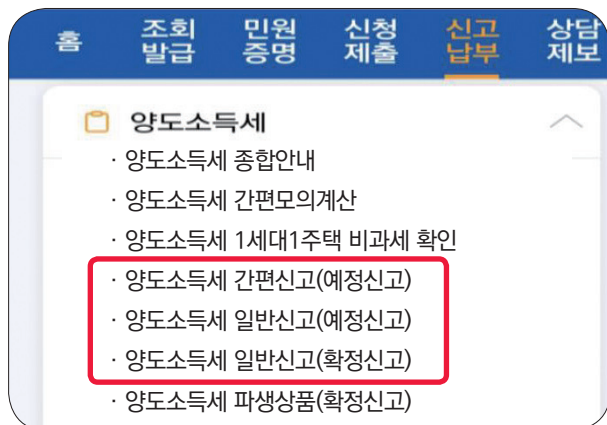
스마트폰 손택스 신고

모바일 앱 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손택스는 회원로그인(아이디/지문인증, 공동·금융·간편인증서)과 비회원으로 이용가능



손택스 앱 로그인 → 신고납부
→ 양도소득세 → 신고 종류 선택



*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, 간편모의계산 등이 이용가능합니다

홈택스 신고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
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
로그인하면 전자신고와 증빙서류를
제출할 수 있습니다.



- 1 예정신고 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신고하는 경우
- 2 확정신고 : 전년도에 양도소득 누진세율 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(5월에만 신고가능)
- 3 기한후 신고 :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경과 후 신고하는 경우
- 4 수정신고 :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

세무대리인용 홈택스

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'파일 변환 신고하기'가 가능합니다.

1. 양도소득세 계산프로그램으로
작성하여 변환하기



2. 변환한 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
신고하기



* 자세한 신고방법은 www.youtube.com 접속 → 국세청 → 세무대리인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참조